

농작물재해보험



조사료용 벼
포함

가입기간 2019.4.22 ~ 6.28

보상재해 주계약 |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

특 약 | 병해충 ※조사료용 벼 제외

* 흰잎마름병, 벼멸구, 도열병,
줄무늬잎마름병, 깨씨무늬병,
먹노린재, 세균성벼알마름병

보험료 지원

정부지원율
50~60%

지자체지원율
15~40%

지자체지원율은 지역에
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


농림축산식품부



NH농협손해보험

상품안내

가입단위

- 보험가입단위 농지당 가입금액 50만원 이상인 농지
※조사료용 벼는 1,000㎡ 이상인 농지

보상하는 손해

- 자연재해, 조수(鳥獸)해, 화재, 병해충 특약(흰잎마름병, 줄무늬잎마름병, 벼멸구, 도열병, 깨씨무늬병, 먹노린재, 세균성벼알마름병)
※조사료용 벼는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만 보장

보험금

보험금	구분	상세사항
이양 · 직파 불능 보험금	지급사유	보상하는 손해로 이양 ·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
	지급액	보험가입금액의 10%
재이양 · 재직파 보험금	지급사유	보상하는 손해로 면적피해율이 10%를 초과하고, 재이양 · 재직파를 한 경우 (농지당 1회에 한하여 지급)
	지급액	보험가입금액의 25% × 면적피해율
수확감소 보험금	지급사유	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
	지급액	보험가입금액 × (피해율 - 자기부담비율) *피해율 = $\frac{\text{보장수확량} - \text{수확량} - \text{미보상감수량}}{\text{보장수확량}}$

※ 이양 : 직파불능보장을 받기 위해선 5월10일(금)까지(예정) 가입해야 함

※ 재이양 · 재직파로 인한 면적피해율 80%이상 시 보험가입금액 변경 됨

보험금	경작불능보험금	수확불능보험금	
지급사유	식물체 피해율이 65% 이상,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	제현율 65%미만, 정상 벼로써의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지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	
자기부담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			
보험금	자기부담비율	경작불능보험금	수확불능보험금
	10%	보험가입금액 × 45%	보험가입금액 × 60%
	15%	보험가입금액 × 42%	보험가입금액 × 57%
	20%	보험가입금액 × 40%	보험가입금액 × 55%
	30%	보험가입금액 × 35%	보험가입금액 × 50%
	40%	보험가입금액 × 30%	보험가입금액 × 45%
※ 경작불능 또는 수확불능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			

1. 병해충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로 보장**2. 조사료용 벼는 경작불능 방식으로 보장**

– 생산비 : 255원/m²(보장 종기 : 8월 31일)

3. 재이앙 · 재직파 보험금 지급

– 자기부담비율과 관계없이 면적피해율 10%를 초과 시 지급

4. 전년도 무사고 할인 5% 적용

– 손해율에 따른 할인 · 할증과 전년도 무사고 할인 합산 최대 할인폭 30%

5. 보험요율 상한제 적용

– 요율 상위 3개 지역의 보험요율을 4번째 상위 시 · 군의 요율로 상한 적용

6. 평년수확량 산출방식

–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가입을 한 경우, 최저값을 제외하고 산출

보장수확량 확대 가능

• 보장수확량을 평년수확량보다 10% 상향하여 보험가입 가능

구분	증액하지 않은 경우	증액한 경우(110% 까지 가능)
가입금액	130만원	143만원
가입수확량	1,000kg	1,100kg
평년수확량	1,000kg	1,000kg
보장수확량	1,000kg	1,100kg
조사수확량	850kg	850kg
피해량	150kg	250kg
피해율 (피해량/보장수확량)	15%	22.7%
자기부담비율	15%	15%
보험금	0원 (130만원×(15%-15%))	11만원 (143만원×(22.7%-15%))

* 가입금액 증액은 자기부담비율 10%, 15% 가입대상자에 한함



가입시 알아두실 사항

1.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·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.

2.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

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(도장을 찍음)을 하셔야 합니다.

3.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
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상 질문사항(고지사항)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을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4.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5. 청약의 철회

일반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(다만,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),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

6. 보험 품질보증제도

보험계약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7.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

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「계약자 부담 보험료」에 「담보별미경과비율」을 곱한 급액을 환급(미납보험료 차감 후 지급)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, 보장기간 종료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.

8.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

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,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9. 보험분쟁조정

가입하신 보험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농·축협 또는 당사(☎1644-8900/인터넷 www.nhfire.co.kr▶전자민원창구)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(☎국번없이 1332/인터넷 www.fss.or.kr)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10. 예금자보호 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 만원이며"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11.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

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(보험사기죄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.

전화 : 국번없이 1332 / 인터넷 : www.fss.or.kr

※보험금 지급 시 약관에 따라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

준법심의필 201904-032호 | 제작 농업보험지원팀(2019.4)



안내사항

전화번호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-8900 | Fax 02)3786-7660

홈페이지 <https://www.nhfire.co.kr> > 보험상품 > 농작물재해보험

* 본 안내장은 상품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